

-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

# 심사보고서

○ 일 시 : 2024. 4. 2.(화) 11:00

○ 장 소 : 본회의장

○ 안 건

-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유재호)

#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심사경과

- 가. 발의일자 : 2024. 2. 29.
- 나. 발 의 자 : 장철규 의원 외 6인
- 다. 회부일자 : 2024. 3. 4.
- 라. 상정일자 :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 4월 2일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장철규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성시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 의정담당관(의회 사무과장)을 신설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따라 화성시의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의정담당관은 의회사무국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사무 등을 처리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의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개정안은 2023년 12월 화성시 인구가 100에 달성함에 따라 상위 법에 근거하여 화성시의회 사무기구와 직원 정수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수정안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 의견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 2. 29.

나. 발 의 자 : 장철규 의원 외 6인

다. 회부일자 : 2024. 3. 4.

라. 상정일자 :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 4월 2일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장철규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성시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 의정담당관(의회 사무과장)을 신설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따라 화성시의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의회사무국장을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 하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 의정담당관을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하도록 함(안 제2조의2).
- 의정담당관의 사무분장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의2).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개정안은 2023년 12월 화성시 인구가 100에 달성함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화성시의회 사무기구와 직원 정수를 변경됨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의 직급을 조정하고, 신설되는 의정담당관의 직급과 직렬,사무분장에 대해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생략
- 6. 수정안요지 : 없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 의견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화성시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 2024. 2. 29.

나. 발 의 자 : 장철규 의원 외 6인

다. 회부일자 : 2023. 3. 4.

라. 상정일자 : 제230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4년 4월 2일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장철규 의원)

가. 제안이유

- 화성시 인구가 100만명을 넘어 의정담당관(의회 사무과장)을 신설할 수 있게 되었음. 이에 따라 화성시의회 소관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의회사무국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의정담당관이 직무 대리를 하도록 조정함(안 제2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개정안은 2023년 12월 화성시 인구가 100만명 달성에 따라 상위법에 근거하여 화성시의회 사무기구와 직원 정수를 변경됨에 따라 사무국장 부재시 직무대리를 의정담당관이 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에 저촉됨이 없고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      략

5. 토    론    요    지 : 생      략

6. 수    정    안    요    지 : 없      음

7. 심 사 결 과 : 원안가결

8. 소수 의견 요 지 : 없 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 음